

1.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中 改定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161號 1996. 5. 27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
정내용 및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주요골자

- 가.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공급
- 나. 외국정부와의 협약과 지원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과
밀된 수도권외 인구분산을 위하여 대전둔산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제3청사
직원을 위한 주택공급

개정이유

주택재개발사업 지역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, 사할린 영주귀국자 동포 및 정부제3
청사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공급

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
체 또는 개인은 1996년 6월 10일까지 다
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
관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
504-9135, 참조: 주택도시국장)에게 제
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
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
성명), 주소

주택회보